

투자설명서 변경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변경 대상 펀드

NO	펀드명칭
1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변경 사항

정정전1)

일 자	내 용
2001년 8월 28일	최초설정
2005년 6월 7일	약관 변경 : Late Trading 반영 등
2006년 12월 20일	약관 변경 : 표준약관 개정사항 반영 등
2008년 9월 29일	펀드명 변경(舊 템플턴 그로스 주식투자신탁 2)
2008년 10월 27일	약관 변경 : 장기투자세제혜택을 위한 운용대상의 명칭 명확화
2009년 4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주식 투자신탁 2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2호

정정후1)

일 자	내 용
2001년 8월 28일	최초설정
2005년 6월 7일	약관 변경 : Late Trading 반영 등
2006년 12월 20일	약관 변경 : 표준약관 개정사항 반영 등
2008년 9월 29일	펀드명 변경(舊 템플턴 그로스 주식투자신탁 2)
2008년 10월 27일	약관 변경 : 장기투자세제혜택을 위한 운용대상의 명칭 명확화
2009년 4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주식 투자신탁 2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2호
2011년 2월	모자형 펀드로 구조 변경 및 집합투자규약, 명칭 변경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2호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효력발생일부터 기존 가입자는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Class C 수익증권의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정정전2)

가. 책임운용전문인력(2010.03.31.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		
오성식	1963년	CIO	20개	5,469억	한국투신운용(1989-1996) 삼성투신운용(1996-1999) 리젠트자산운용(1999-2001) 당사 주식운용CIO(2002-현재)	팀공동운용
강정구	1968년	이사	20개	5,469억	동양종합금융(1994-2000) 삼성증권(2000) AIG자산운용(2000-2008)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2008-2009) 당사 주식운용팀(2009-현재)	팀공동운용

정정후2)

가. 책임운용전문인력(2011.02.01.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억원)		
오성식	1963년	CIO	20개	9,964억	한국투신운용(1989-1996) 삼성투신운용(1996-1999) 리젠트자산운용(1999-2001) 당사 주식운용CIO(2002-현재)	팀공동운용
강정구	1968년	이사	20개	9,964억	동양종합금융(1994-2000) 삼성증권(2000) AIG자산운용(2000-2008)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2008-2009) 당사 주식운용팀(2009-현재)	팀공동운용

정정후3)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써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Class A 수익증권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I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X	판매사 인터넷 뱅킹	최초납입금액 50 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1.기관투자자/기 금 2.최초납입금액 100억원이상: 개인 3.최초납입금액 500억원이상: 법인 4.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5.판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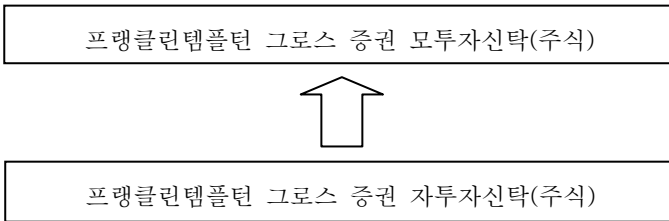
					랩어카운트 6. 판매사 특정금 전신탁
펀드코드	A0344	32714	A0345	A0346	A0347
설정일	-	2001.08.28	-	-	-
수익자에게 직접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1.00% 이내 (매입시)	없음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765%				
판매회사 보수	연 0.75%	연 1.59%	연 0.80%	연 0.10%	연 0.03%
신탁업자 보수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0%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Class C 수익증권 판매회사 보수는 2011년 5월 2일까지 상기 비율을 적용하며,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는 연 1.39%, 2012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는 연 1.20%, 2013년 5월 3일부터는 연 1.00%로 인하됩니다.

정정후4)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국내주식에 신탁 재산의 60% 이상을 투자
	투자목적 저평가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증식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Bottom Up 리서치 - 사전 기업방문을 필수로 하며 이를 통하여 잘 아는 기업에만 투자 - 시장의 Consensus와 무관한 독립적인 분석과 전망으로 시장의 이해부족 (Misperception/Under-research)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초과수익 창출 추구 - 장기 이익전망을 통하여 종목선정 • Business Cycle을 고려한 이익 추정으로 기업의 변화방향을 이해 • 성장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고려 •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구조 변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

		<p>항을 추적</p> <p>나. 저평가된 주식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Market Price)이 내재가치 (Intrinsic Value)보다 싼 주식을 발굴하여 매수 추진 - 기업의 펀더멘탈에 기초한 Valuation 을 실시하며, 기업/산업별 다양한 특징도 함께 고려하여 기업을 평가 - P/B, P/E, EV/EVITDA 등의 기술적 분석 뿐만 아니라 주식 자체의 Quality 또한 고려하여 종목 선정 <p>다. 기업의 내재가치 측정과 유니버스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가치 (Asset Value), 수익가치 (Earnings Power Value), 성장가치 (Value of Growth) 세 요소를 고려하여 내재가치 (Intrinsic Value) 대비 저평가된 기업 선정 - 투자 유니버스는 시장의 스타일 및 규모 구분과 상관없이 저평가된 종목들로 구성 <p>* 비교지수: KOSPI 100%</p>
--	--	---

정정전5)

투자대상	투자한도 (%)	주요 내용
1. 국내주식	60% 이상 단,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신주인수권 및 공모주 포함)에 60%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2. 채권	4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단, 주식관련사채권 및 신용평가등급 BBB- 미만 사채권은 제외)
3.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단,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함.)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6. 수익증권	5% 이하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30%까지 투자 가능)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7.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 총액의 50%이하	
8.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채권관련 파생상품
9. 장외파생상품	아래 나.의 법규상 투자제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 채권관련 파생상품

10.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11.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2.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
13.	기타 사항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5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의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정정후5)

- (1) 아래 제(2)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규약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아래의 투자대상은 주된 투자대상을 기재한 것으로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franklintempleton.co.kr)에 게시된 모집합투자신탁의 규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	주요 내용
1. 국내주식	60%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단,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신주인수권 및 공모주 포함)에 60% 이상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2.	채권	4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단, 주식관련사채권 및 신용평가등급 BBB- 미만 사채권은 제외)

정정전6)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 내용	예외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4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p>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p>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파생상품 매매	<p>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p>○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p>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해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정정후6)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투자제한 중 일부만 기재한 것으로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franklintempleton.co.kr)에 게시된 모집합투자신탁의 규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 내용	예외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4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당해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p>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파생상품 매매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p>○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는 행위</p> <p>○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정정전7)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정정후7)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 1.00% 이내	매입시
환매수수료	1.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2.90일 이상 : 없음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해당 범위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정정전8)

구 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집합투자업자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7650%
판매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1.5900%
신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4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000%
기타비용(사유발생시) ¹⁾	순자산총액의 연 0.0237%
총 보수·비용 비율	순자산총액의 연 2.4187%
증권거래비용 ²⁾	순자산총액의 연 1.0868%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1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판매회사 보수는 2010년 5월 3일부터 상기 비율을 적용하며,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는 연 1.39%, 2012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는 연 1.20%, 2013년 5월 3일부터는 연 1.00%로 인하됩니다.

정정후8)

구분	Class A 수익증권	Class C 수익증권	Class C-e 수익증권	Class C-I 수익증권	Class C-F 수익증권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일반 투자자용: 판매수수료 징구 X	판매사 인터넷 뱅킹	최초납입금액 50 억원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1.기관투자자/기금 2.최초납입금액 100억원이상: 개인 3.최초납입금액 500억원이상: 법인 4.집합투자기구,

					변액보험 5.판매사 라이어카운트 6.판매사 특정금전 신탁
집합투자업자 보수	연 0.7650%				
판매회사 보수	연 0.7500%	연 1.5900%	연 0.8000%	연 0.1000%	연 0.0300%
신탁업자 보수	연 0.04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000%				
기타비용 ¹⁾	실비	연 0.0041%	실비	실비	실비
총 보수·비용 비율	연 1.5550% + 실비	연 2.3991%	연 1.6050% + 실비	연 0.9050% + 실비	연 0.8350% + 실 비
합성 총 보수·비용 비 율(연간, %)	-	연 2.3991%	-	-	-
증권거래비용	-	연 1.0149%	-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 대한 예탁 및 결제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1년 2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설정되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최근 설정된 클래스 또는 총보수비율(기타비용제외)이 해당 클래스와 가장 근접한 클래스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11년 2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입니다.

주6) Class C 수익증권 판매회사 보수는 2011년 5월 2일까지 상기 비율을 적용하며, 2011년 5월 3일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는 연 1.39%, 2012년 5월 3일부터 2013년 5월 2일까지는 연 1.20%, 2013년 5월 3일부터는 연 1.00%로 인하됩니다.

3. 효력 발생일

2011년 2월 23일

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